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18가합591073(본소), 2019가합51179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계약금액반환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선고 2020나2017649(본소), 2020나2017656(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18가합59107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이명의, 최지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은혜

피고(반소원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상섭

변론 종결2020. 4. 1.

판결 선고2020. 5.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79,87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879,876,67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879,87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1. 12. 19.부터 2015. 1. 6.까지 피고 산하 조달청장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를 통하여 B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물품구매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1.12.19.	C	2011.12.19.~2012.11.30.	200,000	2,054,400,000	대지급
2012.11.14.	D	2012.11.14.~2013.11.30.	240,000	2,346,000,000	대지급

2011.12.19.	C	2011.12.19.~2012.11.30.	200,000	2,054,400,000	대지급
2013.7.30.	E	2012.11.14.~2013.11.30.	250,000	2,398,000,000	대지급
2014.1.29.	F	2014.1.29~2014.12.31.	250,000	1,950,000,000	대지급
2015.1.6.	G	2015.1.6.~2015.12.31.	200,000	1,685,000,000	대지급

2)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이 된 B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물품의 계약단가는 아래와 같다.

H 6T/3T	6,290원	6,100원	6,100원	5,800원	5,700원
H 8T/3T	7,690원	7,450원	7,450원	7,100원	7,000원
H 10T/3T	10,790원	11,460원	10,460원	10,100원	10,000원
H 15T/3T	11,790원	11,430원	11,430원	11,100원	11,000원

3)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는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8. 11. 12. 조달청공고 제2018-1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적용) 이 사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사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3(납품요구) ①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며,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변경규격이 계약내역의 다른 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1.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안전을 위해 재질 등을 동등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경미한 계약규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기간 중에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할인행사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등은 우대가격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가격이 낮음을 통보 받을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수요기관 직접 계약체결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거나 시장에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의 현금 납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대금을 환수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12. 4.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28851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7. 12. 20. 벌금 1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I은 2011. 1. 13.경 피고 산하 조달청장과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 이 사건 특수조건 제11조 소정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격 등으로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 물품식별번호 J의 단가를 시중단가보다 4배 내지 5배 높은 6,290원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조달청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달청과 원고 사이에 위 각 단가로 B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내용을 등록하게 하여, 위계로서 조달청 계약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9., 2012. 11. 14., 2013. 7. 30., 2014. 1. 29., 2015. 1. 6. 등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무원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의 환수통보

1)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위 나항 기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이 된 B의 일반 시장단가는 아래와 같다고 진술하였다.

H 6T	2,200원	2,100원	2,000원	1,700원
H 8T	2,600원	2,500원	2,400원	2,200원
H 10T	3,000원	2,600원	2,500원	2,600원
H 15T	3,700원	3,200원	3,200원	3,000원

2)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각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와 위 1)항 기재 시장단가의 차액에 원고의 납품수량을 곱한 879,876,670원을 고가로 계약된 금액으로 보고,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위

879,876,670원1) 의 환수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1)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를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절차 없이 한 명의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차이가 있고,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단계까지는 조달청장이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5. 2. 17. 조달청 훈령 제168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이 사건 특수조건 제6조의3]. 한편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의 지급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를 '대지급'이라 한다)이 원칙이다(조달사업법 제5조의4 제1항).

2) 다수공급자계약 운영절차 개요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구매예정수량을 정하고(업무처리규정 제10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공고를 한다(업무처리규정 제12조).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한다(업무처리규정 제14조).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의 가격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업무처리규정 제16조).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업무처리규정 제18조).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업무처리규정 제21조).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나라장터에 등록한다(업무처리규정 제22조).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한다. 납품업체가 납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3) 가격협상절차 적격자는 가격협상을 위하여 가격자료 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격 총괄표와 규격별 거래내역에는 최저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가중평균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최빈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기재한다(업무처리규정 제16조).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하는데, 원칙적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업무처리규정 제18조), 협상기준가격이 결정되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자에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낸다. 위 통지를 받은 적격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가격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한 가격이 협상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가격협상이 이루어진다.

4) 가격자료의 진실성 담보장치 ① 적격자에게 진실된 가격자료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 위하여 가격자료 제출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증빙자료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을 하도록 한다.

- ②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업무처리규정 제16조).
-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업무처리규정 제34조).
- ④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업무처리규정 제37조).
- 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업무처리규정 제38조).
-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2, 4,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환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산하 조달청의 B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주식회사 L 등에 공급한 일반 시장단가보다 4배에서 5배 높은 단가를 기재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수량 및 단가를 공란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이를 진실로 믿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가로 구매한 금액 즉, 계약물품의 일반 시장단가와 계약단가와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환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물론이고, 원고의 거래처인 K의 대표이사 M 역시 원고와 거래한 B의 실제 거래단가에 관하여 1.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진술한 점, ② 원고 스스로도 피고에게 일반 시장단가보다 금액을 높여서 작성한 거래명세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가격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를 비롯하여 다수의 B 납품업체들이 피고에게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 각 형사판결문에서 인정되는 B의 일반 시장단가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시인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환수통보의 전제로 삼은 시장단가와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사단법인 N가 발행한 물가정보지는 생산자가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여 실거래가와 차이를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와 원고 대표이사 및 원고 거래처의 진술을 토대로 산정한 일반 시장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879,876,670원을 고가로 계약된 금액으로 보고한 이 사건 환수통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피고에게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와 별개로 직접 가격조사를 하여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허위서류 제출과 피고의 계약단가 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산하 조달공무원은 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의 B 단가를 결정하면서 실제 판매단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반 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된 단가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달공무원의 처분행위는 원고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조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최종단가를 정하게 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협상기준가격의 결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격자료 제출 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날인하는데, 이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업무처리규정에서 가격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 거래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사후적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조달공무원이 사전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④ 조달공무원이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조달공무원의 재량일 뿐이고, 계약상대자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달공무원에게 계약상대자의 거래처에 대해서까지 그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강제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실무상 개별 거래업체를 상대로 일반 시장단가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즈음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K,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등 다수의 B 판매업체들이 수년간 원고와 비슷한 방법으로 단가를 부풀린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중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B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의 허위 가격자료를 다수 제출받은 조달공무원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상의 단가가 부당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국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증과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거래보다 계약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원고가 K 등과 거래한 일반 시장단가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가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장단가보다 고가의 거래단가를 책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일반 시장단가보다 수 배가량 높은 단가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각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가 일반 시장단가보다 약 3~4배 정도 높게 결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한 B의 품질과 시중에 판매한 B의 품질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② 다수공급자계약은 i)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ii)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iii)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은 원고로부터 규격화된 B를 납품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용역 업무를 부과하거나 인증을 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그와 같은 비용이 다수공급자계약인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에 포함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입장에서는 B를 시중에 공급하는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B를 판매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시중 판매단가와 달리 유독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계약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단가를 정한다는 것은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사전에 피고에게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수용되기 어렵다.

④ 나라장터에 물품이 등록된 후에야 각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납품을 받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 및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 대신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B를 납품받을 수요기관'이 특정될 수 없고, 그 결과 필요한 용역 내지 인증의 내용 역시 특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설계용역을 수행하거나 인증 등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제반비용을 임의로 미리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수공급자계약이 이러한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반비용까지 포함한 단가로 체결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감액 또는 환수청구권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그러한 손해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물품에 대한 가격자료는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나름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감액 내지 환수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산정방식이나 산정근거가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적정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산정방식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개의 수사절차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과 그 거래처의 대표이사과 공히 인정한 일반 시중단가를 근거로 산정한 이 사건 환수통보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실제의 시중단가가 종전 진술내용과 판이하다거나 피고의 환수금액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879,876,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인 2018.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를 들어 반소로써 이 사건 환수통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수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의 다항에서 인정한 환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민수

판사김선아

판사이민영

별지

1) 다만 피고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감안하여 2013. 8. 31.부터 2015.

12. 31.까지 대금 지급이 된 건에 대하여만 환수통보를 하였다.